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정부표창규정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 크기를 변경하여 표창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정부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정부 표창 증서 크기 변경(안 별지 제3호~제6호)

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(표창장, 상장) 크기를 현행 “205mm×292mm”에서 “240mm×340mm”로 변경함

나.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준용 규정 정비(안 제24조)

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의 증서(표창장, 상장) 크기는 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추후 관계기관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

3) 규제심사 등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~제6호서식 중 “205mm×292mm”를 “240mm×340mm”로 한다.

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표창장과 상장의 크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호				표 창 장				
소 속		성 명		직위/직급 또는 계급				
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표창합니다.								
년		월		일				
대		통		령		○	○	○
		이 증을 대통령표창 기록부에 기재합니다.						
		행정안전부장관		○	○	○		



제 호

표 창 장

소 속

직위/직급 또는 계급 성 명
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표창합니다.

년 월 일

국 무 총 리 ○ ○ ○



이 증을 국무총리표창 기록부에 기재합니다.

행정안전부장관 ○ ○ ○



						제 호	
						상 장	
						소 속	
						직위/직급 또는 계급 성 명	
상장을 수여합니다.							
						년 월 일	
						대 통 령 ○ ○ 	
		이 증을 대통령상장 기록부에 기재합니다.					
						행 정 안 전 부 장 관 ○ ○ 	

	
제	호
상 장	
소 속	
직위/직급 또는 계급 성 명	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	
상장을 수여합니다.	
년 월 일	
국 무 총 리	○ ○ ○
이 증을 국무총리상장 기록부에 기재합니다.	
	행정안전부장관 ○ ○ ○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준용)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(제2항은 제외한다),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24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표창장과 상장의 크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00 - 4092